

자 체 통 제	발행처 안채	계획과 유병은	전화번호 361	근거서류접수일자
운영 계획 업무	계획 과 장	도시계획 국 장	제 2 부 시 장	시 장
9.30.10.14	10.14	10/16	10/17	10/25
관 계 판 서 명	시정 파 관 홍 부 다 정 건축 파 관	내 부 주 기		
기 안 년 월 일	1963. 9. 28	시 행 년 월 일	1963. 10. 31	보 존 년 한
분 류 기 호	415	전체 통제	종 결	정 서 기 장 025918
경 수 참 유 신 조			발 신	
제 목	건축선 지정			
<p>대한 주택공사 홍대 박기덕으로 부러 붙여진 성북구 무유동 산 133-1 지 4필지 이내에 건축선 지정 에 대하여 현감조사 한바 별지 복명서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시행구제 합니다</p> <p>안 1</p> <p>서울특별시 고시 제 196 호 건축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</p> <p>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계획과 및 관할 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공람한다</p> <p>1963. 10. 31</p>				

고시

서울특별시
도시계획국
건축과
장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

윤 태 일

종 목	위	리	부 원	면 광	비 고
건축선	서울특별시 성북구 우유동 산 133의 1	리 4필	B=20.00 B=25.00	L=222.00 L= 88.00	

끝

안 2

서울특별시 인가 제 7호

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45번지

대한주택공사 총대 박기석

1963. 9. 24.자로 위하가 출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우유동 산 133의 1 리 4필내 건축선 지정에 신청에 관하여 별지 고시문과 같이 지정함

1963. 10. 25.

서울특별시 윤 태 일

유형 신청서. 고시문 각 1부 끝

안 3.

우 신 성북구청장

발신 | 위 명 홍 무 라 장

제 목 건축선 지정

성북구 우유동 산 133의 1 리 4필 지내에 대한 주택공사로 부터 출원이 있어 별지 고시문과 도면과 같이

복 명 서

명에 의하여 시내 성북구. 우유동 산 133의 1 건축선
지점에 대한 현감을 조사한바 다음과 같이 복명
합니다

1963. 9. 25

등록기사 유 병 은

서울특별시

이하

1. 장 소 성북구 우유동 산 133의 1 외 4필
2. 소유권 대한 주택 공사 소유.
3. 현 감 주택 공사에서 주민주택을 건립코려 사도
후로 고려 하는 데기로서 도시계획 예정선
이 있음 ~~중~~ 개간 되었음.
4. 건축선의 폭원 및 변장 $B = 20.111$ $L = 222.111$
 $B = 25.111$ $L = 88.111$
5. 도로의 변질 후로 고려 하는 사도에 연결 시키기 기함
6. 배 수 서울특별시 구역에 의한 배수 시설을 할것임
7. 의 건 이지역은 이계획구역으로서 도시계획
예정선이 있는 관계로 예정선에 건
축선을 지정하여 건축을 제한 고려 함.

끝

건축선을 지정 하였으니 사무취급에 할지를 기할 것이
며 일반에게 공람 할 것

유형 고시문 . 도면 각 1부 끝

안 4

우 신

공보안장

발 신

도시계획국장

제 목

건축선 지정

별첨과 같이 고시 하였으니 시변에 끼리 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유형 고시문 1부 끝

공해

건축선 지정 신청서

1963년 9월 16일

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45번지

대한주택공사
총재 박기



서울특별시 장

건축대지 조성키 위하여 하기 위치의 건축선 지정토지 관계도면 첨부하여
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심을 바랍니다.

기

위 치	도 토 폭	연 장	비 고
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동	20 미터	222 미터	
산133의1 입 외4필지 지 역내	25 미터	88 미터	

